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신종위험 예방·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4.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개방형 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교육협력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00. ~ 3.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19호까지”를 “제19호까지 및 제19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9호 중 “운영 및 자치복권 발행에 관한 지도”를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지방재정법」 제88조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에 관한 승인

제12조제1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지도

제18조제4항 중 “제26호까지”를 “제2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신종위험 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

제18조제13항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지원

제53조제2항 중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교육협력과장, 국가기록원”을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649”를 “1,655”로 하고, 일반직 계 “1,607”을 “1,613”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6”을 “47”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69”를 “171”로 하며,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4”를 “35”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01”을 “202”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공업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방재안전연구사 “1”을 “2”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654”를 “1,6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12”를 “1,618”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6”을 “47”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69”를 “171”로 하며,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4”를 “35”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01”을 “202”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공업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방재안전연구사 “1”을 “2”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디지털정부국) ① ~ ⑦ (생략) ⑧ 지역디지털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11. <u>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한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12. ~ 21. (생략) ⑨ ~ ⑬ (생략)	제10조(디지털정부국)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 10. (현행과 같음) <u><삭제></u> 12. ~ 21. (현행과 같음) ⑨ ~ ⑬ (현행과 같음)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①·② (생략) ③ 지방재정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u>제19호까지</u> 의 사항과 그 밖에 지방재정경제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보좌한다. ④ ~ ⑦ (생략) ⑧ 재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제19호까지</u> <u>및 제19호의2</u> ----- -----.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 8. (현행과 같음) 9. -----

금고 <u>운영 및 자치복권 발행에 관한 지도</u> 10. (생략) 11. <u>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운영지도</u> 12.·13. (생략) ⑨·⑩ (생략) ⑪ 회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u><신설></u> ⑫ ~ ⑳ (생략)	-- 운영 10. (현행과 같음) 11. 「지방재정법」 제88조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에 관한 승인 12.·13. (현행과 같음) ⑨·⑩ (현행과 같음) ⑪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지도</u> ⑫ ~ ⑳ (현행과 같음)
제18조(안전정책실) ① ~ ③ (생략) ④ 생활안전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제18호부터 <u>제26호까지</u> , 제30호 및 제32호부터 제38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안전정책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안전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⑥ (생략) ⑦ 안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제18조(안전정책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제27호까지</u> ----- ----- ----- -----.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분장한다.	-----.	· 대전청사관리소 시설과장, 국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과장	-----
9. <신 설>	9. <u>신중위험 분석 및 관리체계</u>	중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	-----
	<u>구축·운영</u>	장 2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두는 과장 중 기본운영규정으로	-----
⑧ 삭 제		정하는 과장 1명 및 국립재난안	-----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전연구원에 두는 과장 중 기본	-----
⑬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⑬ -----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1명	-----
분장한다.	-----.	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있다.	----
<신 설>	22. <u>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u>		
	<u>합관제센터의 운영 지원</u>		
22. (생 략)	23. (현행 제22호와 같음)		
⑭ ~ ⑱ (생 략)	⑭ ~ ⑱ (현행과 같음)		
제5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5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② -----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	-----		
라 행정한류담당관, 국제디지털	-----		
협력과장, 지방규제혁신과장,	-----		
비상대비훈련과장, 지진방재정	-----		
책과장, 재난보험과장, <u>지방자</u>	----- <u>국가기록</u>		
<u>치인재개발원 국제교육협력과</u>	<u>원</u> -----		
<u>장,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장·</u>	-----		
디지털혁신과장, 정부청사관리	-----		
본부 과천청사관리소 시설과장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49</u>	<u>1,655</u>	+6
·	·	·	
·	·	·	
일반직 계	<u>1,607</u>	<u>1,613</u>	+6
·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46</u>	<u>47</u>	+1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69</u>	<u>171</u>	+2
·	·	·	
·	·	·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34</u>	<u>35</u>	+1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201</u>	<u>202</u>	+1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 송통신주사·공업연구사·시설 연구사 또는 방재안전연구사	<u>1</u>	<u>2</u>	+1
·	·	·	
·	·	·	

[별표 2의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54</u>	<u>1,660</u>	+6
·	·	·	
·	·	·	
일반직 계	<u>1,612</u>	<u>1,618</u>	+6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46</u>	<u>47</u>	+1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69</u>	<u>171</u>	+2
·	·	·	
·	·	·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34</u>	<u>35</u>	+1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201</u>	<u>202</u>	+1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 송통신주사·공업연구사·시설 연구사 또는 방재안전연구사	<u>1</u>	<u>2</u>	+1
·	·	·	
·	·	·	